

김제시지방공사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 :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)

가. 제 안 이 유

-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도지사에게 위임되어왔던 내무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제 개정하려는 것임
 - 주 요 골 자
 - . 지사. 사무소 설치시 “내무부장관의 승인”을 “시장의 승인”으로 함
 - . 시장 임면시 “내무부장관의 승인”을 “도지사의 승인”으로 함

- . 사채발행 및 외국차관의 경우 “장관의 승인”을 얻던 것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2조의 기준에 따른 소규모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하는 경우에는 “도지사의 승인”으로 함
- . “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”를 삭제함

3. 전문위원 검토 보고

- 지방공기업법 제49조(설립)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

4. 질의 및 답변

- 질의(의원 정영환)
김제개발공사를 만들어 놓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몇 개의 지방공사가 설립되었는지?
- 답변(기획예산담당관실 황은택)
지방공사는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92년 내무부에 보고 시범적으로 4군데를 운영하였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음
눈썰매장을 운영하여 보고 내년쯤에는 운영관계를 판단하여야 할것임

- 질의(의원 조민종)

현재 개발공사는 인사. 예산. 사무등 모든 권한이 의회의 권한은 전혀없음
의회에서 제재할수 있는 방안. 인사. 예산. 사무 권한이 들어갔으면 하는
바램임

- 답변(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)

현재는 모법인 공기업법에 융통성이 없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 의
거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사하여 시정하는 방안이 있고, 앞으로 지방자치법이
나 공기업법이 개정되었을 때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마련하겠음

5. 심 사 결 과

- 총 11명 위원중 8명 위원이 참석,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